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1. 11. 23.(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주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10월 29일
-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일

3. 제안이유

-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·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책무 등 (안 제3조)
- 기본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- 자문위원회 (안 제5조)
- 교원연수 등 (안 제6조)
- 미디어교육센터 설치 등 (안 제7조)
- 재정지원 (안 제8조)

5. 조례안 예고

- 2021.11.3.(수) ~ 2021.11.8.(월) 특기할 사항 없음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, 안 제2조에서는 “미디어교육”을 ‘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·활용 능력, 비판적 이해 능력, 창의적 생산능력, 민주적 소통 능력, 시민 윤리의식을 증진시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’으로 정의하였음.
-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하여 정하고,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‘미디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등’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경우, 「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」에 따른 ‘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’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각각 교원연수를 실시하거나 미디어교육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안 제8조에서는 미디어교육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생산·유통·소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미디어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